

언론법 교육의 현실과 문제점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I. 언론법 교육의 문제점

각 대학의 언론학 교육 과정에서 언론법 교육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인터넷에 교과과정이 소개된 19개 국내 대학의 언론관련 학과를 조사한 결과 2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언론윤리 법제나 언론법제 등의 과목을 개설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직 언론인들이 언론법을 학습할 기회는 아직 많지 않다. 언론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은 언론인들이 언론법에 관하여 교육받을 기회는 언론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신입기자 연수교육에서 2시간 정도 강의를 받는 것이 고작인 실정이다.

언론법제 교육은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책임을 완수하는 전문언론인을 양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분야이지만, 우리 나라의 언론법 교육실태나 연구환경은 초보적인 단계이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언론법제를 전공한 법학자나 언론학자가 많지 않아 활발한 연구와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언론법 교육은 언론학과 법학이라는 방법론적으로 상이한 두 학문 분야를 동시에 이해하고 있어야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언론법은 전문적인 영역의 법이다. 전문적인 영역의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기초법과 일반법, 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각 대학 언론관련 학과의 커리큘럼에서 이러한 기초법학 과정을 선수과목으로 지정하는 학교는 없다. 따라서 언론법을 수강하는 학생이지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를 구별하지도 못하고, 헌법과 일반법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태반인 실정이다.

언론법 강의 수강 학생들은 법에 대한 기초 지식의 부족뿐만 아니라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개념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오랫동안 획일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받아온 학생들에게 자유와 권리는 실제적으로나 관념적으로 매우 생소한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학생들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종류와 그 조항들을 줄줄 외울 수는 있어도, 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지, 왜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법 교육에는 현실적인 법체제의 교육과 아울러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철학적, 이론적, 논리적 접근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언론법 강의는 언론관련 법조문과 판례를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지, 아니면 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수밖에 없는지를 실질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에 필요한 언론법 교육은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보다는 학생들이 진지하게 숙고하고, 활발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토론식 수업이다. 학생들 스스로 논리적용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혹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밖에 없는 결론에 이르도록 유도함으로써 언론법의 당위성이나 무용성을 이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 언론관련 법조항이나 판례를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도 이론적, 논리적 이해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법조문과 판례자체에 대한 학습에도 많은 한계가 따른다.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는 아직은 교육과 연구의 대상이 될 만큼 잘 짜여져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판례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어 일반인들에게 제공되지도 않고 있고, 판례에 대한 학문적 해석도 미비한 실정이다. 더욱이 전공학자들도 많지 않아 학계 내에서 활발한 논의와 토론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언론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우리 나라 언론법학 연구체제가 시급히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나마 우리 나라의 법학연구체제는 실제적인 판례분석보다는 법학이론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다. 또 국내 판례의 심층적 분석보다는 외국 판례의 비교연구가 많다. 물론 우리보다 일찍 법체계가 갖추어졌고 기본권 보장이 충실한 선진국의 판례 중에는 우리 나라 법원에서 준용할 필요가 있는 원칙이나 이론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외국법원의 법 해석이 국내 판례에 직접 적용되는 예는 극히 드물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등과 같이 언론법학계에 널리 유포된 미국 법원의 법적 기준은 우리가 참고하고 지향해야 할 가치가 있긴 하지만, 아직은 우리현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판례를 세밀히 분석해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무엇인지, 적용해야 할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 판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지적하는 학문적 작업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II. 법적 현실의 한계와 문제점

1. 법치주의 질서 확립의 과제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나라 언론법 교육이 부실한 것은 어찌면 당연하다. 아직 우리 사회의 제반 여건이 언론법 교육을 충실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언론법 교육이 본 궤도에 오르려면 그와 관련된 세 영역, 즉 언론, 법, 교육이 각각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우선 법과 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법치주의 사회가 되어야 하고,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본래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법학 교육과 언론학 교육이 모두 실제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조인과 언론인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서 언론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아무리 사람을 두들겨 패도 처벌 받지 않는 사회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강의할 필요가 있겠는가? 언론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회에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법률규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국민들이 법을 준수하는 법치주의 사회가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언론법 교육도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라고 자부할만한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민주사회의 법이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합의한 규칙이다. 따라서 한 사회가 본래 지향하는 목표에 도달하고 가치를 실현하려면 당연히 그 구성원들은 법을 제대로 알고 지켜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법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지키는 사람도 드물었다. 우리 사회에서 법의 존재는 지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가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듯 했다.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세상물정을 모르는 사람들로, 융통성이 없는 고지식한 사람들로,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할 힘이 부족한 사람들로 여겨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법 감정이었다.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뉘우치기보다는 재수없이 자기들만 걸려들었다고 자조하는 세태가 우리의 법현실이다.

법이 우리 사회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지켜지지도 않는 것은 법이 개인의 권리를 지키고 사회적 평화와 질서를 보장하는 공존의 도구라기보다는 권력의 지배 수단, 개인의 출세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지난 30여년 간의 군사독재 치하에서 법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합의한 규칙이 아니라 집권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만든 보호막에 불과했다. 법은 인간의 가치와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야만적 생존경쟁 체제에서 강자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무기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입법과정과 법 집행과정, 그리고 사법적 심판 과정에 대해 총체적으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 있었다. 따라서 법은 사회적 갈등이나 개인적인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도구가 되지 못한 채,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운 것이 현실이었고, "법대로 하자."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말이 되고 말았다.

결국 대통령에서부터 일반 서민에게까지 법에 대해 무지하고, 불법행위를 체질화시킨 사회가 되었다. 국가적으로 커다란 범법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역대 대통령들은 "엄벌에 처하라", "엄단하라."는 추상같은 명령을 내리곤 한다. 그러나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임무가 아니라 사법부의 법관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바로잡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우리나라국민들이 법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당장 길거리에 나가 교통법규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보면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매일 저녁 방영되는 텔레비전 뉴스 화면에는 법을 위반한 사람들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 법을 지키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차고 있다. 뇌물을 받은 정치인, 윤락업소를 경영한 경찰관, 콩나물에 농약을 넣는 식품제조업자, 의료비를 속여 청구하는 의사, 부정 입학을 눈감아 준 교수, 취재원을 갈취한 사이버 기자 등이 마치 매일 똑같은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 반복한 것처럼 텔레비전 화면에 등장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불법행위가 법대로 처벌을 받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법을 어겨도 결코 적발이 되거나 처벌 받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 즉 법에 대한 불신론과 무용론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다.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되는 사회로, 남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그것을 배상해야 하는 사회가 되어야 비로소 언론법 교육도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언론도 사회규범을 어기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법적 책임을 지는 사회가 되어야 언론법을 배우고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기본권 보호와 법원의 역할

물론 법은 모든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수단도 아니며, 법치주의가 민주사회의 완성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어느 사회에서든 법은 결국 강자의 지배논리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만들어진 법도 실상은 소수의 반대를 제압한 다수의 입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법은, 특히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 헌법은 약육강식의 정글 원리가 인간사회에서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약자를 무시하거나 도래시켜서는 안 된다는 기본권사상은 모든 법의 기초이다. 기본권은 아무리 강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다수라 하더라도 함부로 제약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가치인 것이다. 이러한 가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이다.

그러나 인간의 본능적 지배욕구는 약자나 소수자의 기본권 보호를 거부토록 한다. 그래서 어느 사회든 소수의견을 반사회적이고 비능률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도태시키려 한다. 물론 전체 사회를 보호하려는 진솔한 경우도 있지만, 다수의 이익추구에 방해가 되는 소수를 제거 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권력은 다양한 논리와 수단을 동원해 약자나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려고 든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안보나 미풍양속을 이유로 오랫동안 언론의 자유가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자유 침해사례를 돌이켜보면 집권세력이 내세운 국가안보나 미풍양속과는 무관하고, 실제로는 지배세력의 집권연장을 위해 소수자를 희생시켜 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 사회 내의 다수자 혹은 강자를 견제하고 소수자를 보호함으로써 법치주의 질서를 확립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공정한 사법부이다. 정권 및 제반 지배세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양심과 논리에 의해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법부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법치주의 실현과 언론의 자유 보장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우리의 사법현실은 아직 공정한 사법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법원의 판결이 상식과 논리에 입각해, 입법의도와 판례에 따라 결정되기보다는 지배세력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 지적, 논리적, 역사적 기록으로서 평가하고 분석할만한 법원의 판결을 찾아보기 힘든 것도 이 때문이다. 사법부가 법적 논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세상에서 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이다.

3. 법학 교육의 문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법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드는 나라이다. 고시공부를 위해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밤을 새워가며 법학수험서와 씨름하고 있고, 대학의 법학 강의는 가장 수강생이 많이 몰리는 인기 과목이다. 그러나 법을 이해하고 지키기 위해 법을 공부하는 젊은이들은 많지 않다. 열심히 법을 공부하는 것은 좋은 직업을 구하고 신분상승에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했을 뿐이다. 기계적 법학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법률가가 될 수 없는 우리의 법학 교육 제도의 희생자들이다. 자신의 자유를 지키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을 공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소위 출세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률서적에 매달리는 것이 우리 법학 교육의 현실이다. 결국 준법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법률교육은 없고, 남을 지배하는 무기로서 법률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속을 외면한 채 도서관, 고시원, 사찰에

틀어박혀 남보다 많은 법조문과 판례를 암기해야 세인이 부러워하는 판검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법은 살아있는 현실이 아니라 무덤 앞에 세워진 묘비문과 같을 뿐이다. 그러나 단순히 법조문을 암기하고 판례를 읽는 것으로 법학 교육이 완성될 수는 없다. 법은 결코 현실과 격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은 언어의 논리적 나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고뇌와 의지를 반영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을 알고 이해하려면 그 법에 담긴 정치, 사회, 경제, 역사적 배경을 파악해야 한다. 법에 투영된 각종 사회적 관습과 전통을 이해해야 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 받는 연방대법관 중의 한 사람인 올리버 웬델 홈스(Oliver Wendell Holmes Jr.) 연방대법관은 일찍이 법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문을 성경의 산상수훈처럼 받들어 모시던 19세기 말의 미국 법조인들에게 병의 실체를 바로 알라고 권고했다. 법의 생명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이다. 인간을 통치하는 규칙인 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 삼단논법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로 했던 것, 그 당시 품이었던 도덕적, 정치적 이론, 공공 정책 속에 매여있는 그 시대 사람들의 직관력(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심지어는 법관들이 동시대 사람들과 공유했던 편견 등이다. (The life of the law has not been logic: it has been experience. The felt necessities of the time, the prevalent moral and political theories, intuitions of public policy, avowed or unconscious, even the prejudices which judges share with their fellow-men, have had a good deal more to do than the syllogism in determining the rules which men should be governed.) (Oliver Wendell Holmes, *The Common Law*, Little, Brown and Co., Boston, 1881, reprinted in 1963.)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법학교육 현실은 법에 내재된 인간의 삶을 외면한 채 법조문이나 판결문에 담긴 언어적 해석이나 논리적 분석에만 치우쳐 왔다. 더욱이 그러한 법적 논리도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을 만들고 적용하는 과정이 상식과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세력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왔기 때문이다.

III. 언론현실의 한계와 문제점

1. 권언유착의 폐해

법적 현실의 한계뿐만 아니라 언론현실의 문제점도 언론법 교육이 부실한 원인이 되고 있다. 권력 못지않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우리나라 언론에게 법은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운 존재였다. 우리 언론은 한때 4·19 혁명을 주도하며 정권의 감시자, 비판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5·16 쿠데타 이후 군사독재정권은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언론을 활용했다. 이때 군부가 동원한 채찍과 당근에 우리 언론의 민주적 전통은 무참히 허물어지고 말았다. 독재자들은 정권의 비리를 못 본 체하고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언론에게 갖가지 재정적 특혜를 베풀었다. 대신 부정부패를 질타하고, 정권의 무능을 비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언론에게는 가혹한 탄압을 자행했다. 유신정권과

5공 정권을 거치면서 진실보도를 수행하고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언론인들은 철저히 제거되었고, 정권의 비리를 눈감아 줄 수 있는 언론인들만이 남게 되었다.

정권의 비호를 받아 온 언론인들은 법을 알아야 할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했다. 그들은 물론 정권이 요구하는 법적 의무는 충실히 지켰다. 독재정권이 만든 각종 언론 관련법은 국민의 알 권리는 철저히 차단하는 대신 언론기업에게는 엄청난 재정적 특혜를 주었기 때문이었다. 5공 독재정권이 언론기본법과 같은 악법을 만들어 진실보도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 시켰지만 어느 언론인도 법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역대 정권들은 언론기본법, 정기간행물 등록법, 방송법 등을 통해 언론기업에게 엄청난 이윤을 보장해 주는 대신, 이들에게 진실에 대해서 침묵할 것을 요구했다. 언론관련법은 기득권 언론을 보호하고 권력과 언론이 유착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전략했다.

한편 권력의 편에 선 언론은 국민들에게 그 위세를 떨치며 거리낌 없이 재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 언론의 불법 취재보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해도 감히 처벌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기대할 수 없는 시절이 한동안 지속되었다. 허위기사를 통해 개인의 신용과 명예가 짓밟히고 사생활을 유린당해도 이의제기조차 할 수 없는 시절이 있었다. 물론 언론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법에 호소한다 하여도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상황이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당연히 언론인들은 법을 알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권력과 언론의 굳건한 유착관계가 지속되는 한 언론에게 법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이었다.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자신들만의 특권으로 생각한 언론인들은 부패한 정권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국민들의 알 권리는 외면하면서 안하무인 초법적인 존재로 한동안 행세했다.

2. 언론교육의 문제점

언론이 강력한 지배집단이 되고 재정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알짜기업이 되면서 언론인은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되었다. 70년대만 하더라도 배고픈 직장이었던 언론은 유신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가장 배부른 직업이 되었다. 언론직종은 높은 임금, 두둑한 촌지, 각종 세제특혜를 누리면서 권력과 명예가 함께 주어지는 최고급 일자리가 된 것이다. 당연히 언론사의 신입기자 채용시 힘은 사법고시만큼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해마다 수 천명이 몰리는 언론고시의 선발기준은 기자로서의 자질이나 윤리의식보다는 국어, 영어 등의 시험 점수가 우선이었다.

따라서 대학에서 신문방송 학이나 언론학을 전공하는 것과 기자가 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 되고 말았다. 언론인이 되려면 신문방송학과 과목을 열심히 수강할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 틀어박혀 사법고시생처럼 열심히 시험공부를 해야 했다. 일단 언론고시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체계적인 언론인 수업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수습기자들은 대부분 선배들로부터 도제식 교육을 받았다. 즉 선배들이 전해주는 취재보도 관행을 이의없이 신속하게 답습하는 것이 우수한 수습기자가 되는 지름길이었다. 결국 선배들의 무모한 불법취재관행도 여과 없이 후배들에게 전달되면서 우리 언론계의 고질병으로 굳어졌다. 언론학과나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하는 것과 언론인이 되는 것이 커다란 상관관계가 없지만 철모르는 어린 학생들은 매스컴의 화려한 매력에 이끌려 여전히 신문방송학과로 몰려왔다. 그러나 그들은 취재보도론이나 언론법 제론과 같은

과목 수강이 언론계로 진출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곧 발견했다. 대학에서 충실하게 언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언론인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연마한 학생은 결코 언론인이 될 수 없는 현실은 대학의 언론학과 교육이 언론 현실과 괴리된 채 점점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교육에 치우치도록 만들었다. 대학의 언론관련학과는 사실상 언론인 양성을 포기한 채 언론학 연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그러나 언론의 발전이나 개혁에 기여할 만한 연구도 많지는 않았다. 언론학자들이 발표한 논문들은 현직 언론인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서구의 마스크 이론들로 점철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최근의 언론환경 변화는 대학 언론학과의 교육이 실무중심의 교육으로 바뀌도록 만들고 있다. 언론법제에 관한 교육이 각 대학에 보편화되는 것도 실무중심으로 언론학 교육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대학의 언론학과로 하여금 실무 교육을 강화하도록 만든 것은 90년대 들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언론시장의 판도이다. 지역민방, 케이블 TV, 지역신문, 전문잡지, 컴퓨터 통신 등 새로이 시장 진입한 중소 미디어는 일간신문이나 공중파 방송사와 같은 기존의 대형 미디어와 동일한 인력 채용방식이나 직원 훈련방식을 시행할 여력이 없다. 언론고시를 통해 뽑은 수습기자를 수개월 동안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훈련을 시킬만한 자원이 그들에게 없는 것이다. 중소 언론사는 곧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훈련된 인력을 필요로 한다. 이들에게는 국어나 영어 시험성적이 우수한 수험생보다는 대학에서 이미 취재보도나 프로그램 제작에 대해 교육을 받은 예비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언론시장의 요구에 따라 대학의 교과 과목도 실무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언론법 교육도 실무 교육의 일부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있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언론 인력은 취재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자의 실수로 수천 만원의 소송비용과 수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미디어의 소형화와 다양화가 가속화되면서 자립기반이 취약한 언론사에게 기자의 법적 무지로 인한 오보나 사생활 침해는 언론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언론관련 소송의 변화

한편 언론보도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묵묵히 분을 삼키던 시대도 지나가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건수나 명예훼손 고소사건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소송에서 언론사가 패소하는 비율도 높아졌으며, 손해배상 액수도 크게 늘어났다. 이제는 수억 원대의 명예훼손 소송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직 법치주의가 완전히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언론도 법을 무시하고 지내기는 힘든 시대로 바뀐 것은 분명하다. 일부 신문사에서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도 이제는 법을 무시하고 신문을 만들기 힘든 세상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지난 4월 이후만하더라도 명예훼손과 관련되어 언론사가 피소되거나 패소한 경우가 허다했다.

-지난 4월 MBC 시사매거진 2580에 자신의 행적이 보도된 김홍도 서울 금란교회 목사는 MBC를 상대로 3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출했다.

-지난 4월 류근일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기사협회 보에 실린 자신에 관한 기사와 관련 기사협회 보와 담당기자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강원도민일보에게 자민련 홍천·횡성 지구당 위원장인 조구현씨에 대해서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 경향신문사는 국회의원 도박사건을 특종 보도한 것과 관련한 논평을 이유로 한국언론연구원과 안병찬 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서울지법 민사합의 25부는 지난해대통령 선거 직전 김대중 후보를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한 격주간지 인사이드월드 손충무 발행인에게 1억 2천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7월 김봉조 전 한국 마사회장은 자신이 공금착복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10억 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 서울지법 민사합의 25부는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향신문사와 김상택 화백을 상대로 낸 10억 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물론 아직은 미국처럼 명예훼손이나 불법취재행위 때문에 수백억 원의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언론의 무책임한 불공정보도나 부정확한 보도가 국민들에게 묵묵히 받아들여지는 시기는 분명 지나가고 있다. 언론인들도 병을 알고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취재보도 행위를 해야 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 언론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당연한 법치주의 원리가 차츰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은 당연히 반길 일이다. 따라서 언론인이라면 당연히 언론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IV. 언론법 교육의 방향

1. 언론자유 의 파수꾼 양성

언론법 교육이 언론을 법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만은 결코 아니다.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도 언론인들에게 언론법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인들만이 누리는 특권은 결코 아니다. 언론은 국민이 누려야 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대신 누리는 대리인으로서, 언론의 자유가 위협 받을 때는 최전방에서 방어 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언론이 언론의 자유보호에 앞장선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70년대 "자유언론수호운동"과 같은 전통이 80년대 이후에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언론은 오히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가보안법을 동원해 좌익사상을 척결하고, 불건전한 영화를 검열해야 하고,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을 규제하자고 우리 언론은 요구해 왔다. 언론이 간헐적으로 언론자유를 주장하는 경우는 대개 언론사의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였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언론기업의 이윤추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이 권력의 대변인 노릇을 하라고 제공한 결의도 아니고,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게 베푸는 특혜도 될 수 없다. 언론의 자유는 주권을 지닌 국민들이 권력의 보복없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였다. 미국의 대표적 언론자유 이론가인 알렉산더 마이클존(Alexander Meiklejohn)은 "언론의 자유는 궁극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진실이라고 관련된 것들을 모든 시민이 공유하기 위해 보장된 것"이라면서 "시민들이 공공복지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입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주된 이유" 라고 설명했다.

우리 나라에도 국가통치에 언론의 자유가 필수적임을 인식한 선인들이 더러 있었다. 정도전은 "군주의 첫째 덕목은 언론의 개방"이라고 역설했고, 이율곡도 "언론의 열리고 막힘이 나라의 흥망에 관계된다."고 말했다. 조광조도 말길이 막히면 나라가 어지러워 망한다면서 "인군은 말길을 넓히는데 힘써서 위로는 정승과 관리에서부터 아래로는 시정 잡배에 이르기까지 모두 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역대 왕조나 근대정권을 막론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온 정권은 드물었다. 결국 많은 희생과 투쟁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때 우리 언론인들이 "자유언론실천운동"을 통해 과감히 유신정권에 대항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언론인들은 권력에 의해 철저히 제거당했고 이후 30여 년이 넘도록 진행된 권력과 언론의 유착은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의 귀와 눈을 별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때의 관행을 벗지 못한 우리 언론은 아직도 시민사회에 필요한 여론형성의 기능을 도외시한 채 발행부수와 시청률 제고를 통해 금전적 수익을 높이고 정치적 영향력을 늘리는 데 몰두하고 있다. 이들에게 언론의 자유란 언론기업의 상업적 이윤추구의 도구로만 생각될 뿐이다. 권력집단을 감시하고 권력남용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국민의 기본권을 사적인 이익추구에 오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개혁의 요구가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언론개혁은 부정과 불법을 일삼는 전제권력이나 독재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그들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언론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언론의 자유를 남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언론자유 보호에 앞장서는 언론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다. 언론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유언론실천운동"을 주도한 선배 언론인들처럼 권력과 자본의 유혹과 압력을 뿌리칠 수 있는 가치관과 용기를 지닌 언론인들이 필요하다. 언론법 교육도 언론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굳건한 언론인을 양성하는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책임 있는 언론인 양성

언론개혁은 언론의 자유에 상응하는 책임을 완수하는 언론이 있어야 가능하다. 무책임한 언론은 언론인 자신이나 언론기업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역할을 한다. 현재의 IMF 경제위기는 소비를 조장하고 경제질서를 파괴하고 부정 부패를 묵인한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행태와 경영방식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언론법 교육은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언론의 책임도 강조해야 한다. 물론 언론의 책임이라는 것은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국민을 계도해야 한다."는 권위주의 언론관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시민사회에서 언론이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이것이 옳다느니 저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고 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지도 못한다. 언론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정보전달과 여론형성의 기능을 수행하면 될 뿐이다. 국민들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선택할지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론형성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언론의 주된 임무이다.

시민사회의 언론의 책임은 이미 각종 언론윤리강령을 통해 명백히 천명되었다. 언론법 교육은 언론이 윤리강령 실천을 통해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건전한 여론형성,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의 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한국신문윤리강령).

훌륭한 신문은 공정 하고 정확하고 정직하고 책임 있고 독립적이고 품격을 갖추어야 하며 진실이 항상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신문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건설적 비판자가 되어야 한다. 사실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개혁과 혁신을 주장해야 하고 공적이거나 사적인 권력 의 남용이나 부정을 고발해야 한다.(AP 통신 편집인협회 윤리강령)

중요한 공공 사건에 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언론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언론을 통해 뉴스와 의견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민을 대변하는 기자의 신분을 개인적, 기타 부적절한 동기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언론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미국 언론인협회 윤리강령)

언론개혁이란 이러한 윤리 강령을 실천할 수 있는 언론인다운 언론인을 다수 배출할 때에야 가능해질 것이다.

3. 관용교육으로서의 언론법 교육

언론법을 이해하려면 기초법과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도록 만드는 가치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언론법 교육은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법조문 암기보다는 법에 투영된 사회적 전통, 의지, 관습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법 교육은 논리적 사고력을 함양하고 인권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가치관 교육이 되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가 표방하는 가치는 다양성 존중이다. 다양성이란 개인적, 사회적 관용이 존재해야 보장 받을 수 있다. 다양성이 아닌 획일성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란 대개 사회적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혼란을 조장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인간이 이질화보다 동질화를 추구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생소한 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동질화시키려 든다. 비록 우리 사회는 헌법에 언론의 자유를 못박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언론자유 의 밑거름인 다양성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사회이다. 언론법 교육은 다양성의 의미와 가치를 주지시키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특히 오랫동안 권력과 자본의 지배이데올로기에 세뇌된 우리 사회는, 그리고 단일민족으로서 단일문화의 전통을 가진 우리 사회는 다른 사회보다 진실의 다원성이나 의견의 다양성을 수용할만한 관용이 부족하다. 남과 다른 것을 용납하려 들지 않는 사회이고, 그래서 타협보다는 대립이 많은 사회이다. 그러나 이질적인 것에 대한 관용,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체질화되지 않고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다원적 사회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거듭 강조하지만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소수의견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다수결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다수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나 표현이 억압받는 경우는 드물다. 다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허락하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이다. 따라서 민주사회의 언론은 다수의 여론을 대변하는 동시에 소수의 반대의견도 전달할 책임이 있다. 당연히 언론인은 누구보다도 넓은 관용의 폭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언론인은 또한 소수의 자유가 침해되었을 때 그들의 권리를 앞장서 방어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너그러운 포용력과 관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진정한 언론인은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 말을 할 권리에 대해서는 죽음을 감수하면서도 보호할 것(I disapprove of what you say, but I will defend to the death your right to say it)"이라는 볼테르의 관용정신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법제 교육은 그러한 관용을 가진 언론인을 양성하는 기초작업이 되어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이제 우리 나라 언론법 교육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언론법 교육과 관련된 세 분야, 즉 언론도 법도 교육도 모두 아직은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법치주의 실현은 아직도 머나먼 목표에 불과하고, 권력과 유착된 언론은 법을 초월하는 존재로 행세해 왔다. 법학 교육이나 언론학 교육도 진정한 법조인이나 언론인 양성을 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언론법제 교육이 부실한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언론법을 전공한 교수나 언론법을 전문적으로 다룬 법조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개념적 이해도 부족하고, 기초법 지식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전문영역인 언론법을 강의하자니 당연히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론법 교육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의 책임을 실현케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언론환경의 변화도 더이상 법적으로 무지한 언론인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언론법 교육은 언론인이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거나 언론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려는 소극적인 동기와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려는 적극적인 동기가 복합되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전자는 현행 언론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숙지를 필요로 하는 현실적 교육이 될 것이고, 후자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충분한 가치를 인식하는 이론적 교육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을 보호하기 위한 언론법 교육은 현행 언론관련법이 어디까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지 정확히 밝혀주는 작업이다. 물론 언론의 자유는 가능한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의해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언론인이라면 취재보도 행위와 관련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 불법 취재보도 행위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지적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서도 법적인 지식이 필수적이다.

효율적인 언론법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언론법 교육만이라도 피상적인 법학 교육에서 실질적인 법학 교육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민법, 형법, 국가보안법 조항 등을 통해 명예훼손이나 음란표현 등의 사례를 암기하는데 그치는 교육이 아니라, 왜 명예를 훼손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왜 국가안보가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해야 하는지, 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러한 법 조항과 판결문 등이 생성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 등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언론관련 법조항이나 판례뿐만 아니라 그 존재 이유와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법을 지키는 언론인을 양성하는 것이 언론법 교육의 근본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법 교육은 또한 언론의 자유를 최전방에서 지키는 파수꾼을 양성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독재체제하에서나 민주사회에서나 언론의 자유는 항상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언론이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할 언론의 자유는 특정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언론의 자유가 아니다. 그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그리고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가 되어야 한다. 언론은 정권에 의해 혹은 다수의 군중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침해 당했을 때 앞장서 방어해야 한다. 물론 언론의 책임을 외면하면서 무조건 언론의 자유만을 주장하는 언론은 당연히 도태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법 교육은 언론의 책임을 완수하고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진실한 언론인을 양성하는 과정으로서 언론개혁의 한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충실한 언론법 교육은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언론개혁을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언론법 교육은 언론의 그릇된 관행을 고치고,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언론의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언론법 교육을 통해 언론의 자유의 의미를 이해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로 언론의 임무를 완수하는 언론인을 양성해 낼 때 비로소 우리는 언론의 본래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경희대 영문과 졸업,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언론학 석사, 박사
-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연구부장, 언론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현재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